##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를 안 제14조를 안 제15조로 하고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(의회의 보고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1.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- 2.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, 예산서 및 세입·세출 결산서
  - 3.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사항 및 지도·검사 결과에 관한 사항
- 제13조(운영위원회) ①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주요사업계획
  - 2. 예산편성 배분에 관한 사항
  - 3. 장비 등 주요물품 구입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- ③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5명 이상이 되도 록 위촉하여야 한다.
- 1.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
- 2.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
- 3. 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기업인
-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	③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5명이상이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. 1.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2.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2.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. 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기업인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위원회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.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<u>제13조(</u> 준용) (생 략)	<u>제14조(</u> 준용) (제정안과 같음)
<u>제14조(</u> 시행규칙) (생 략)	<u>제15조</u> (시행규칙) (제정안과 같음)